

행정사무감사 서면답변 자료

질의내용

사회복지시설 지원 기준

- 사회복지시설은 노인, 아동, 장애인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시설에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입소자 보호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 지원기준은 시설의 종류, 입소자 및 종사자 수 등에 따라 지원기준이 각각 상이하여 지원기준을 모두 기술하기 어려워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에서 제작 배포한 지원기준 관련 책자 사본을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1. 노인복지시설 지원기준 사본 1부.
 2. 아동복지시설 지원기준 사본 1부.
 3.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기준 사본 1부. 끝..

확인자 직위 사회복지과장 성명 이 대 용



작성자 직위 복지기획담당 성명 김 이 경



구분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원장	1인	1인	1인
사무국장	1인	1인	1인
생활복지사	1인	1인	1인
의사	-	1인	1인
간호사	50인당 1인	25인당 1인	25인당 1인
물리치료사	-	1인(입소자 100인 초가시마다 1인 추가)	1인(입소자 100인 초가시마다 1인 추가)
생활지도원	25인당 2인	10인당 2인	5인당 2인
사무원	1인(입소인원 100인 이상 시설)	1인(입소인원 100인 이상 시설)	1인(입소인원 100인 이상 시설)
영양사	1인(입소인원 50인 이상 시설)	1인(입소인원 50인 이상 시설)	1인(입소인원 50인 이상 시설)
조리원	1인(입소인원 50인 이상시설은 2인, 입소인원 100인 이상 시설은 3인)	1인(입소인원 50인 이상시설은 2인, 입소인원 100인 이상 시설은 3인)	1인(입소인원 50인 이상시설은 2인, 입소인원 100인 이상 시설은 3인)
위생원	1인	1인	1인
관리인			1인(입소인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요양, 전문요양시설의 간호사는 시설형편에 따라 시설장이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 실시

※ 생활지도원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형편에 따라 시설장이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 실시

※ 사무원, 관리원, 생활지도원은 시설 형편에 따라 통합 운영가능

○ 시설종사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근로수당 지원

<연장근로수당>

- 2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등) 및 조리원 : 월 30시간, 연 365시간기준
- 기타 종사자(원장 포함) : 월 15시간, 연 180시간 기준

<야간근로·휴일근무수당>

- 예산의 범위내에서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06년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계획

- 급속한 고령화 및 효문화 쇠퇴 등에 따라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 보호
- 노인의 생활불안 해소와 가족 수발부담을 경감하고 부양가족의 소득활동 참여로 경제활성화 및 안정적인 가족기능 유지 도모

I. 큰 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규정
- 노인복지법 제42조(감독)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사업 운영상황을 조사, 검사

II. 기본방침

- 치매·중풍 노인보호를 위한 주간보호시설 확충운영
-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현실화를 통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유급가정봉사원 확대배치로 서비스 수준 향상
- 도·시군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 구성운영

III. 사업개요

- 사업량 : 재가노인복지시설 137개소
 - 치매·중풍 노인주간보호시설 50개소 : '06년도 신규
 - 가정봉사원파견 34, 주간보호 46, 단기보호 5, 가정봉사원교육 2
- 2006년 지원예산액 : 16,052백만원(도비6,016 시군비10,036)
 - 치매중풍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 8,694백만원(도비3,808 시군비4,886)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7,358천원(도비2,207 시군비5,151)

IV. 단위 사업별 추진 계획

1. 치매중풍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06년 신규사업)

□ 설치기간 : 2006. 1. 1~9.30

□ 설치주체 : 시·군,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 수행 비영리 법인 등

□ 사업량 : 50개소(본청31, 2청19)

- 주간보호시설이 없는 시·군·구에 1개소씩 확보
- 재정자립도가 낮고 시설설치 노력이 있는 시·군에 우선 배정
- 설치 희망 시·군의 수요량 및 시설 현황을 감안하여 배정
⇒ 시군별 설치사업량 및 현황 「별첨1」

□ 설치 및 운영 요건

- 사업자 소유 건축물 등에 개보수 및 장비구입 등
▶ 경로당, 보건기관, 종교시설 등 유휴공간 활용

구분	계	경로당	종교시설	보건기관	복지시설	기타
설치량 (단위:개소)	50	6	10	3	27	4

- 치매 또는 중풍노인 보호시설로 특성화하여 설치
▶ 시군 실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질확별 혼합시설 병행 가능
- 시설 설치시 재활장비는 「별첨2」의 필수장비를 반드시 구입
- 시설 설치·운영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적용
- 이용대상 : 치매중풍질환자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 치매·중풍질환자 :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로 같음

□ 추진일정

- 2005. 8월 : 시군별 수요조사
- 2005. 12월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사전 설명회
- 2006. 1월 : 시군별 사업량 확정 및 지침 시달
- 2006. 1~2월 : 보조금교부신청, 현장확인 및 시설의 별도 "명칭"선정
- 2006. 3~9월 : 사업시기에 따라 자금교부 및 설치, 개원

□ 2006년 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 8,694백만원

- 시설 설치비 : 6,00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개소당 120,000천원 한도내 지원

- 사용내역 : 인테리어, 재활장비, 집기 및 가전제품, 송영차량 구입 등

※ 설치비로 매입 또는 임대추진 절대불가

- 시설 운영비 : 2,694백만원(도비30%, 시군비70%)

- 이용규모별 연간지원 금액(이용 최저 현원 기준)

(10인시설 89,000천원, 15인시설 108,000천원, 20인시설 127,000천원)

※ 시설 이용규모 및 운영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

《 직원배치 기준 》

- 시설의 장 :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전담 또는 겸임 가능

○ 상시근무 인력

• 사회복지사 : 1인

•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사(간호조무사) : 1인

• 생활지도원 : 10인시설 1명, 15인시설 2명, 20인시설 3명

○ 겸임 또는 시간제 근무 가능 인력

•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또는 운전원, 추가 생활지도원 등

시설 규모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

⇒ 조리원, 보조원 또는 운전원, 추가 생활지도원을 채용시 고령자 채용(老-老 케어)

2. 기존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

□ 시설규모에 적절한 이용인원 확보 추진

- 주간보호 대상이 아닌 이용자는 생활시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지역사회복지관 등을 이용토록 조치
- 지역사회내 주간보호서비스가 필요한 치매·중풍노인 발굴

□ 시설운영 시 이용대기자 명단을 반드시 비치 관리

□ '06년 시설운영비 조정 : 도 1회 추경 반영 추진

- 연간 운영비는 시설 운영실태 및 예산확보 상황을 검토후 별도 통보

3.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운영

□ '06년 연간운영비 : 개소당 162,000천원(도비 30%, 시군비 70%)

- '05년도 유급봉사원 추가 인원분을 도 1회 추경 반영 추진(1~12월)

□ 서비스 대상 노인수 : 개소당 110명 이상

V. 평가 및 홍보 계획

사업평가

□ 평가대상 : 재가노인복지시설 137개소

- 기존재가노인복지시설 87개소

(주간보호 46, 가정봉사원파견 34, 단기보호5, 가정봉사원교육 2)

- 치매중풍 노인주간보호시설 50개소

※ 신규 또는 운영정상화 등으로 운영비 지원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1.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

-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에게 학습 및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필요경비지원
- 노후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을 위한 환경개선비 지원,
- 시설안전사고 등 사전예방과 통학 및 물품 운반시 시설의 어려움 해소

□ 사업개요

- 대 상 : 15개 시·군 27개소
- 지원내용 및 기준

구 분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기준	비고
특별위로비	전아동	32,000원	4회(설,추석,어린이날,연말)	
학습재료비	만3세 이상	700원	240일	
문화교제비	초등학교	5,000원	매월	개별 무동장 입금
	중 학교	7,000원		
	고등학교	10,000원		
수학여행비	초, 중, 고	70,000원	수학여행 참가자	
하계수련회비	하계수련참석아동	50,000원	하계수련회 참가자	
교육보호비	취업준비중인 고3	100,000원	학원에 등록하여 수강하는 자	
시설장비 및 환경개선비	아동양육시설	5,000천원	개소당	
안전관리원 지원	"	950,200원	인,월,개소	남자로 채용할것
승합차량지원	-	19,020천원	개소당 1대 지원	2004년 신규지원

○ 예산액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계	27개소	1,469,762	0	734,881	734,881	
본청	16개소	951,086	0	475,543	475,543	
2청	11개소	518,676	0	259,338	259,338	

□ 행정사항

- 교육보호비 지급 시 학원에 납부한 영수증 첨부
- 시설장비 구입 및 환경개선비는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년도별 중복 구입여부 확인) 후 지원하고 추진결과 증빙서류 첨부를 제출받은 후 현장 확인 필히 이행
- 시군별 또는 시설별 자체 예산절감 방안 적극 강구시행
 - 각종공공요금 및 안전점검료, 송금수수료, 푸드뱅크활용, 소요물품 저가구입 등

2006년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수당 가이드라인

(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근무경력	지급액	지급횟수 및 지급일
(1) 상여수당				
가) 기말수당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3·6·9·12월 보수 지급일)
나) 정근수당	전 종사자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4년미만 5년미만 6년미만 7년미만 8년미만 9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봉급액의 50% 봉급액의 55% 봉급액의 60% 봉급액의 65% 봉급액의 70% 봉급액의 75% 봉급액의 80% 봉급액의 85% 봉급액의 90% 봉급액의 95% 봉급액의 100%	연 2회, 1·7월 보수 지급일
다) 장기근속수당	전 종사자	5~9년 10~14년 15~19년 20년이상	정액 40 정액 50 정액 60 정액 80	매월 보수 지급일
라) 가계지원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4·5·10·11월 보수 지급일)
(2)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가) 가계보조수당	전 종사자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나) 교통·급식비	전 종사자		정액 100	매월 보수 지급일
다)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에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3) 특수근무수당				
가) 생활복지사수당	생활복지사		정액 30	매월 보수 지급일
나) 생활지도원수당	생활지도원		정액 50	매월 보수 지급일
다) 기타직 근무수당	기능직		정액 30	매월 보수 지급일
(4) 연장근로 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산임금(보수월액)× 1/226×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지급일
*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2004년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등 참조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2006년 장애인생활시설 직종별 지원기준

직종명	지원기준
원장	시설당 1명(동일부지내 타 시설과 시설장을 겸하는 경우는 중복지원 불가)
총무	¹⁾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사무원	생활장애인 100인 이상 시설당 1명
시설관리인	생활장애인 200인 이상 시설당 1명
사회재활교사	²⁾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영양사	³⁾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50인 이상인 시설
간호사	시설당 1명, 중증·아동장애인 150인 이상 1명 추가
물리치료사	중증·정지·지체장애인 30인 이상 시설당 1명
언어치료사	청각·언어장애인 시설의 경우 시설당 1명
보행훈련사	시각장애인 시설당 1명
생활지도원 (생활재활교사)	중증, 영유아장애인 47명당 2명
	아동장애인 8명당 2명
	정지, 시각장애인 10명당 2명
	지체, 청각·언어장애인 20명당 2명
조리원	시설당 1명, 생활장애인 50인 이상 1명 추가
위생원	⁴⁾ 시설당 1명, 다만, 생활장애인 30인 이상 시설, 생활장애인 200인 이상 1명 추가
축택의사	중증·아동장애인 30인 이상 시설당 1명

※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적용을 제외하고, 직원의 이직·퇴직의 경우 및 '06년 신규 지원의 경우 등 기준적용(각주 1, 2, 3, 4.)

※ 직원 인건비 지원은 관련장비 완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실제 근무할 수 있는 경우를 원칙으로 함.